2023-10호(10. 31.)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 1
2.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 ··· 6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계약법」 ····· 11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2

□ 환경복지위원회

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4

□ 농산업경제위원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8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0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2

□ 교육위원회

1. 「초·중등교육법」 ····· 25
2. 「사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26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 31

Ⅳ. 법령 해석 사례

1.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 41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 45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관련) ····· 51
2.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53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2024년 한국 경제 전망(현대경제연구원) ····· 59
2. 잘파세대(Zalpha Generation)의 부상(하나금융경영연구소) ····· 65
3. 한국사회와 자살예방정책(동아시아재단) ····· 73
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라북도의 대응과제(전북연구원) ····· 79
5. 지역대학 졸업자의 지역 이동 및 취업성과(한국교육개발원) ····· 87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응(경상남도) ····· 97
2. 어린이 버스·도시철도 요금 무료화 시행(부산광역시) ····· 99
3. 전국 최초 어린이집 맞춤형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개발(서울특별시) ····· 101
4. 지자체 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충청북도) ····· 104
5. 전국 최초 '학교행정지원청' 설립 추진(부산광역시교육청) ····· 106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사업 분석(농림축산해양수산위) ····· 11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필요(행정안전위) ····· 114
3.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연령 상향 등 모바일 발송 확대 필요(기획재정위) ····· 117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 ····· 125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27호, 2023. 10. 6., 제정]

1. 제안이유

가. 장애는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도장애임.

나.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기입원,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음.

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27호, 2023. 10.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재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교육적·사회적·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8.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42호, 2023. 10. 11., 제정]

1. 제안이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잘못된 교육방식과 태도에 따른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 등 시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술함(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을 명시함(안 제6조)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42호, 2023. 10.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여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홍보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계약법」

[시행 2023. 12. 15.] [법률 제19698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계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계약법」[2023.12.15. 시행]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01~2023-09-10)

◇ 개정이유

국가는 소속 직원(변호사)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2(소송 수행자의 지정)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환경복지위원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8호, 2023. 10. 24., 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 · 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 · 관리와 수질개선,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 · 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 ·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안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8조 및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 · 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 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물순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21조 및 제24조).

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자.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0-20~2023-10-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이력조회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 등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이에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신설 등).

◇ 개정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구급차등의 운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 운전자가 구급차등을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44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5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제44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제1항제4호의4를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44조의5를 위반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3.9.15. 시행]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도로교통법」[2023.10.24. 시행]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19호, 2023. 10.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견기업 전문기관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58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6조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100		
나.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12. 30. 시행]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0-11~2023-10-25)

◇ 개정이유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곡가공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 주요내용

가. **양곡가공업자의 지위 승계인의 권리보호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문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조의2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곡관리법」[2021. 11. 30. 시행]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7. 3. 2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2.]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가입 유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 개정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1호 중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를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 9. 29. 시행]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0-23~2023-11-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을 두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의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

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 **개정문**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택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조합이 미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해산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분담금 액수는 해당 주택조합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주택법」[2022. 12. 27. 시행]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2023.6.28. 시행]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9-13~2023-09-22)

◇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時局事件關聯教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국회도서관, 제230호, 박진애)

□ 배경

○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내부고발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일조한다. '내부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내부고발자의 사익 치해 방지'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2023년 7월 2일 발효한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단일 법률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926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9268호)

□ 도입

○ 내부고발이라 함은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근거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동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471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부패행위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2002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부패 신고로 이첩된 사건 총 3,448건 중 내부신고는 53.4%인 1,854건으로 조사되었다. 내부신고 이첩사건 중 부패혐의가 적발된 1,277건의 조사 결과, 4,970명에게 기소·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부패적발로 인한 추징·환수 금액이 7,009억여 원으로 전체 사건의 추징·환수 대상액 8,724억여 원의 80.3%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고발이 부패 적발에 효과적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 2019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지침을 제안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 법률 위반 고발자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공공부문 또는 민간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있어서 공익침해 행위나 법률위반 행위를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및 국제 수준에서 균형있고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 내부고발은 공익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는 사건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신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등 민주적 원칙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 등 기본권을 고려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9L1937

○ 동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독일을 포함한 8개 회원국(독일, 체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을 상태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독일 연방정부는 중재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동법의 의결에 합의함으로써, 2023년 7월 2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 「내부고발자 보호법」

1. 입법목적

○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목적은 정보보호,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제품안전, 식품안전, 법인세 및 자금세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부고발자란 본인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어떠한 직업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공익 침해 행위나 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동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즉,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부당행위 등을 조직 내부에서 개선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경영) 과도 관련된다.

- 2023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개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인권과 환경 관련 위험사항과 의무 위반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는 내부고발 절차와 연관지어 운영될 수 있다.

2.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1) 보복 금지

○ 보복 금지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 보복이란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유발하는 해고 및 징계 조치, 집단 괴롭힘, 차별, 배제, 불평등한 대우 등을 말한다.
- 동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보복 이전의 협박 및 시도까지 금지하고 있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및 이를 시도하는 자는 **5만 유로(약 7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보복 금지를 위반한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 내부고발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은 해당 신고 또는 공개에 대한 보복으로 주정되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고발 방법 선택권

○ 내부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내부 또는 외부 신고사무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 고발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보복이 우려되지 아니할 때는 신고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 내부에서 신고한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외부 신고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하는 등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내부고발자가 정보공게 전에 내부 또는 외부 신고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적절한 회신이나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긴급상황이거나, 신고 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 증거물 은폐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내부 신고사무소

(1) 설치 의무 대상 및 운영방식

○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1개 이상의 내부 신고사무소를 동법의 발효일인 2023년 7월 2일까지 설치할 의무를 진다.

-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50명 이상 249명 이하의 직원 수를 가진 회사는 12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 직원 수 50명 미만의 기업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동법에서 열거하는 증권거래소나 자산운용사 등은 피고용인 수와 무관하게 내부 신고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내부 신고사무소는 ① 조직 구성원 중 1인 또는 ②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③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는 고용주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2) 준수사항

○ 내부 신고사무소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늦어도 7일 이내에 내부고발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확인 통보
- 신고한 위반이 동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심사
- 내부고발자와 상시적 연락체계 유지
- 접수된 신고의 타당성 심사
- 필요한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추가 정보 요청
- 적절한 후속 조치 실행
- 내부고발자에게 신고접수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예정되거나 실행한 후속 조치 및 이유 회신

(3) 기밀유지

○ 내부 신고사무소 신고 절차에서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도 처리할 수 있다.

○ 신고사무소는 내부고발자, 신고대상자, 신고에 언급된 그 밖의 사람의 신원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고사무소에서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된 모든 신고를 기밀유지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조회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자가 직접 자신의 고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은 절차 종결 후 3년이 지나면 삭제한다.

(4) 과태료

○ 회사 내부에 신고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지 않을 경우 **2만 유로(약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5. 외부 신고사무소

(1) 운영방식 및 설치기관

○ 외부 신고사무소의 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부 신고사무소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내부고발자에 대한 회신이 3개월 이내에 처리하기에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외부 신고사무소는 연방법무청, 각 주(州)의 외부 신고사무소, 연방금융감독원, 연방 카르텔감독청 등에 설치된다.

(2) 공개의무

○ 내부 신고사무소 절차와 달리 외부 신고사무소는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진다. 외부 신고사무소에 접수된 신고는 매년 요약 보고서 형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 외부 신고사무소는 독일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연방정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고서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 시사점

○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관련 법규에서는 내부고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관한 법적 정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논의의 객관화를 위해서 내부고발자 개념 정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1조에서 내부고발자의 개념 정의와 함께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가 내부 신고사무소 또는 외부 신고사무소 중에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내부 신고사무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조직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의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또는 외주 방식으로 신고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 신고사무소는 연방 법무청, 각 주(州)의 외부 신고사무소, 연방금융감독원, 연방카르텔감독청 등에 설치된다.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로서 보복금지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직업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복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전환

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보복금지 조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고발로 인한 불이익 금지 및 입증책임 전환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 내부고발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서 471건의 법령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제2조 적용 범위에서 법령명을 열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기준 등이 포함된 법령의 내용을 서술하여 **포괄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기술 방식을 통해 입법목적에도 합치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관련 법제에서도 내부고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는 입법개선이 요청된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3-0767, 2023. 10. 13.,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 같은 영 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

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같은 영 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 같은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 개정규정을 같은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제처 23-0689, 2023. 9. 22., 법무부]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각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충전차(각주: 전기자동차(제1호)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를 말함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친환경차충전시설”이라 함)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친환경차(각주: 전기자동차(제1호),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제3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서만 각각 주차가 제한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각주: 친환경차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에서도 주차가 제한되는지?**

【회답】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각주: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이 각각 포함됩니다.**

【이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각각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가 각각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는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6. 법제처 22-0840 해석례 참조).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제1조)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은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친환경차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규율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더욱이 구 친환경자동차법(각주: 2021. 7. 27. 법률 제183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23호로 친환경자동차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 제11조의2제4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이동하고 “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개정안 발의 당시 입법자료(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992호)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는 전국에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인지 아니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범위’를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입법의도가 명시되어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

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친환경차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 .10.) 참조.)이고,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차 금지 및 단속 필요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 각각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법제처, 의견23-0345, 2023. 9. 27., 경상북도 구미시]

【질의요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

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사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320, 2023. 9. 20., 경기도]

【질의요지】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도 확인되며, 이와 달리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16. 의견제시 23-0108 참조).
따라서,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 기대 속 장기 저성장 우려 차단 필요

–현대경제연구원(2023. 9.)–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부문**은 **하반기 반등이 기대되었던 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총수요를 크게 확장시킬 여력이 약해 보인다.

○ **(소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7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2%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하였다.

○ **(설비투자)**는 수출 및 내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비 기준 -8.9%로 이는 **11년 4개월만 최대 감소 폭**이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여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될 전망이다.

○ **(건설경기)**는 현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급락으로 **향후 심각한 침체가 예상**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 **(수출 경기)**는 對 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침체가 1년 3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1년 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고용시장**)은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면서 **산업간·연령층 간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8월 중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4.4%나 상승하였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4%로 전월(2.3%) 대비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개선세가 정체**되는 모습이다. 가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8월에 103.1p로 7월(103.2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한은 BSI(전망)는 8월 73p에서 9월 73p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 전망의 배경

○ 20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회복세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복합불황의 지속, 주요국 통화긴축 누적효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과 같은 리스크로 인해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2024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전환(pivot), 제조업 경기의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선진국 통화긴축의 누적효과 등으로 회복 정도는 기대보다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과잉대응(overkill)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의 피크아웃(peak out)으로 **가파른 경기 둔화세는 회피**할 수 있어

보인다.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개선과 함께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성장세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는 물론 미·중 갈등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 회복 기대감 역시 현재로서는 큰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및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같은 하방압력이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의 완만한 개선과 이로 인한 제조업 경기의 반등,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기대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복합불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저점 형성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 향방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고점 형성 후 23개월간 하락하였으나, 올해 4월 저점(98.5p)을 기록하고 3개월간 상승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생산지수(3개월 이동평균, 원지수) 역시 올해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부진세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아직 내수와 외수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저점 형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소매판매와 수출 감소세 지속과 함께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5월 이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과거의 추세와는 달리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2024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지표상 상반기 성장률(2.3%)이 하반기(2.1%)보다 높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 상반기의 낮은 성장률(0.9%)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민간소비)**는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인해 가계 소비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고금리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의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부문의 누증된 부채와 이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은 민간소비 회복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금융 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내년 건설투자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증가세는 **2023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과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반도체 갈등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설비투자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수출입)**의 경우 2023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은 2024년 세계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수입수요가 소폭 반등하고,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경기침체,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과 같은 하방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입** 또한 2023년 대비 국내 투자심리와 수입 수요가 일부 개선되면서 **증가세 전환이 전망**되나, ICT투자 침체 및 건설수주 불황 심화 등 국내 경기 여건상 수입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상수지**)는 수출 반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폭 완화 등으로 **2023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대비 미흡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여행수지 적자 완화 효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유국 감산 기조 지속에 따르는 유가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으로 인해 상승세 둔화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고용여건**)은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증가세 전환이 기대되지만,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조업 및 건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시장 전반이 기대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구 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6**	0.9	1.5	**1.2**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1.3	**2.2**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0.5	**1.2**	-0.5	1.5	**0.5**
설비투자 (%)	**-0.9**	5.3	-5.4	**-0.1**	-2.0	5.0	**1.5**
수출증가율 (%)	**6.1**	-12.4	-2.1	**-7.4**	12.5	5.6	**8.9**
소비자물가 (%)	**5.1**	4.0	2.7	**3.4**	2.7	2.4	**2.5**
실업률 (%)	**2.9**	3.0	2.7	**2.8**	3.2	2.6	**2.9**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2024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024년에도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선순환 고리 형성의 출발점인 **수출**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투자 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원자재 가격의 재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 공급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비용전이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실물은 물론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려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잘파세대의 부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9.)-

Ⅰ. 개요 : 잘파세대의 중요성 확산

□ 잘파세대(Zalpha Generation)란 MZ세대 중 Z세대와 M세대의 자녀인 α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인구집단을 의미

○ **기성세대와 구분해 젊은 층을 아우르는 말**로 최근 몇 년간 사용된 MZ세대 중 M세대가 기성세대로 접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용어

○ '23년 기준 Z세대는 만 13세~26세(1996년~2009년생)로 중학생에서 사회초년생, α세대는 만 12세 이하(2010~2024년생)로 미출생아에서 초등학생에 해당

○ 포스트 Z세대인 α세대는 세대 전체가 21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로 호주의 미래학자이자 인구통계학자인 마크 매크린들이 10여년 전 처음으로 명명

□ '디지털·모바일 네이티브'를 넘어 'AI·챗봇 네이티브'라 불리며 이전세대보다 빨라진 신체적 성숙도와 더불어 왕성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커뮤니티 소속감을 중시하며 오프라인 경험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세대로 이러한 성향은 α세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그림1 | 국내 잘파세대 인구 현황(2023)



자료 : mois.go.kr

표1 | 세대별 출생 구분 및 디지털 환경 특징

2010~2024년	α세대	디지털 온리 AI네이티브 챗봇 네이티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청하며 오프라인 경험을 특별하다고 인지. 3~4살 때부터 AI챗봇과 친구처럼 성장
1995~2009년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모바일 네이티브	유치원생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며 디지털 디바이스를 특정 언어의 원주민처럼 활용
1980~1994년	Y세대 (밀레니얼)	디지털 이민자	청소년기부터 스마트폰 등의 IT기기를 사용함
1965~1979년	X세대	아날로그	아날로그 환경에서 성장한 이후 디지털 환경을 학습함
1946~1964년	베이비 부머 세대	아날로그 (텔레비전)	인생의 절반을 넘긴 이후,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환경을 익히는 중

자료 : 새로운 인류 알파세대(2023,매일경제신문사)

□ Z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α세대도 이미 브랜드 영향력과 구매력을 보유

○ Z세대는 경제, 사회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세대가

될 것이며 '31년에는 밀레니얼의 소득을 넘어설 것 (BofA, 2020)

- 전 세계 Z세대(1996~2016년생 기준)의 소득은 '30년 33조 달러로 '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전 세계 개인소득의 1/4을 차지하며 M세대의 소득을 넘어설 것

- Z세대의 경제력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부모 세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 시작하면 자산 규모와 구매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

○ 아직 주체적 소득·소비 활동이 불가한 α세대도 부모·조부모의 영향으로 본인 명의 자산 형성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가정 내 소비 여정에서도 숨은 결정자 역할

- '22년 말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약 76만 명으로 '19년 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늘고있는 추세

- 초저출산에 따른 한 자녀 쏠림 현상으로 밀레니얼 부모의 소비력이 α세대에게 집중될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소비를 지향하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뉴 맘 이코노미를 형성

Ⅱ. 잘파세대의 금융경험

1.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잘파세대는 생애주기상 주요 과업인 학업과 시험, 교우관계에 대한 관심만큼 금융/경제에도 유사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미성년자(초·중·고생)의 최근 관심사 또는 실천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시험(58초등행%)'이 1위 '앱테크(55%)'가 2위, '용돈마련(54%)'이 3위

○ 잘파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융/경제 교육이 국영수 과목보다 더 중요**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 부모도 62%가 공감

□ 잘파세대의 대부분이 금융거래 시 애로사항을 느끼며 이로 인해 금융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은 제한적인 모습

○ 잘파세대의 94%가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로 인한 거래 제한을 제외하면 ‘금융교육 및 지식 미흡’이 가장 큰 걸림돌

- 기타 여윳돈 부족, 상품 가입 절차의 복잡성, 맞춤 상품/서비스 부족 등의 애로사항 보유

○ 금융거래나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실천/참여한다고 응답한 잘파세대 비율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금융에 대한 관심도 대비 낮은 수준

그림4 | 잘파세대의 관심사 및 실천 활동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5)

그림5 | 잘파세대의 금융거래 애로사항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5)

□ 학령기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형성됨

○ 금융거래시 부모 의존도가 높은 알파세대에게는 전통은행의 브랜드 인지도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높지만 Z세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지도가 1위

- 최초 상기(브랜드 제시없이 떠올리는 1순위 브랜드) 은행은 학령기를 불문하고 전통은행으로 아직까지 잘파세대에게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전통은행이 각인되어 있음

- α세대는 아직 은행과 핀테크 일부를 제외하면 금융브랜드를 잘 모르며, Z세대로 넘어가면서 금융기관 브랜드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

○ 초등학생에게 은행은 돈을 ‘안전히 모으는 곳’, 중·고등학생에게는 ‘편리하게 쓰는 곳’, 대학생에게는 ‘보관하는 곳’으로 저축/투자 기관으로서 가치 인식이 하락

- **α세대와 Z세대 모두 은행의 가치**를 돈을 불리고, 빌리는 자산관리 측면에 두기보다 주고받고 **보관하는 기능적 측면에 부여**

○ 잘파세대가 생각하는 전통은행의 주된 이미지는 ‘전문성’과 ‘안정성’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앱 편리성’과 ‘대중성’

-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전통은행이 우위에 있는 속성은 전문성, 안정성, 신뢰성, 지점 접근성으로 기능적 이미지 보다 감성적 이미지가 다수
- 전통은행이 열위에 있는 속성은 대중성, 혁신성, 앱 편리성, 창의/차별성 등이며 특히 앱 편리성 항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격차가 크게 벌어짐

2. 금융거래 형태와 특징

□ 잘파세대의 주 소득원은 ‘용돈’이며 특정 미션을 수행하고 리워드를 받는 ‘앱테크(App-tech)’를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여 소비와 저축의 기반을 마련

○ α세대의 97%, Z세대의 80% 이상이 용돈을 받으며 수령 주기와 방법에 차이

○ 잘파세대의 약 80%가 앱테크 참여로 용돈을 추가 마련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절반은 매일매일 참여할 만큼 앱테크가 일상화되어 있음

- 잘파세대의 90% 이상이 앱테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α세대의 35%, Z세대의 80% 이상이 앱테크로 월 용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확보

□ 소비 시에는 주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며 용돈의 일부로 목표기반 저축을 생활화

○ 잘파세대가 지출 시 이용하는 주된 수단은 체크/선불카드로 α세대는 전통은행, Z세대(중고등학생)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카드 이용률이 높음

○ 잘파세대의 2/3가 용돈을 남겨 저축을 하며 α세대의 저축률이 Z세대 보다 높고 두 세대 모두 취미 및 문화생활, 전자기기 구입 등 목표기반 저축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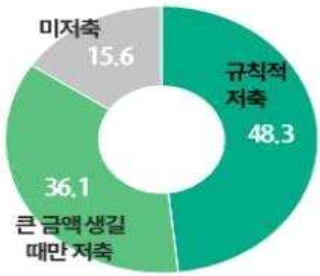
- α세대는 용돈의 100%를 지출하는 비율이 약 10%로 Z세대(35%)의 1/3 수준이며 미저축율도 7%로 Z세대(중고등생 20%, 대학생 11%)보다 낮음

그림8 | 학령기별 앱테크 참여율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5)

그림9 | 잘파세대의 저축습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5)

□ 첫 거래 금융기관은 부모의 영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전통은행을 선택하지만 현재 (주)거래 금융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선호

○ 잘파세대가 금융기관과 첫 거래를 하게 되는 주된 계기는 '부모님의 금융상품 가입' 으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다음은 '집 근처에 은행이 있어서'

○ 부모가 자녀 명의 첫 상품 가입시 본인의 주거래은행 이용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잘파세대의 첫 거래은행이 전통은행인 비율이 높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탈

□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금융거래 시 부모 의존도가 감소하고 본격적으로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앱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편리성과 캐릭터/디자인을 중시

○ 금융거래시 부모 의존도는 초등학생 78%, 중학생 29%로 중학생 이후 급감

○ 아직 금융거래 이슈가 많지 않은 α세대는 자동화기기(ATM)이용률이 가장 높고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 앱 이용률을 20%수준

□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주식투자,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니즈를 보유

○ α세대는 본인명의의 체크카드, 중학생 이후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며 미션 달성시 소액의 경제적 보상/포인트가 주어지는 서비스가 탑재된 앱을 기대

○ α세대는 심부름/미션 후 보상, 용돈 기입장 작성, 학교 금융수업에 Z세대는 모의투자, 환율 등 금융/경제원리 공부 등에 관심

□ **금융회사 선택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며 어른/직장인이 되어 자산이 형성되었을 때 시중은행을 우선 고려**

○ 금융사 선택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다음으로 신뢰성, 수익성, 전문성을 중시

○ 성인이 되어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선호하는 관리 방법으로 영업점 직원의 응대가 있는 대규모 시중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Ⅲ.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응사례

□ **금융회사는 밀레니얼 부모 또는 잘파세대를 타깃으로 상품과 체크카드를 출시**

○ (하나은행) 아동 양육을 위한 수급 대상자, 임산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최대 연8%)를 제공하는 '아이키움 적금' 을 출시

○ (KB국민은행) 미성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네 가지 테마(입출금, 증권연계계좌, 청약, 모바일 뱅킹)의 계좌 개설시마다 리워드를 제공하는 'KB 키즈패키지' 를 출시

○ (신한은행)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연계해 입출금과 주식매매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용 증권계좌 'MY주니어(S-lite)' 통장을 출시

○ (우리은행) BC카드와 함께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우리 WON뱅킹 앱을 통해 가상계좌를 만들어 사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 '우리틴틴' 을 출시

□ **α세대를 중심으로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브랜드 각인 노력**

○ (하나은행)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워크북 및 키트(kit)를 제공하는 비대면 실시간 금융교육 프로그램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를 운영

○ (신한은행)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있는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을 최근 확대 개편

○ (NH농협은행) 전국에 운영 중인 16개의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의 교육프로그램 'N키즈 금융학교' 를 운영

□ **빅/핀테크社에 대응해 미래손님 선점을 위한 위한 유스(Youth) 전용 플랫폼 출시**

○ (카카오뱅크) 2020년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카오뱅크mini'를 최초로 출시하였으며 최근 최저가입연령을 만 7세로 하향 조정

○ (토스뱅크) 지난해 유스카드 이용 연령을 대폭 낮추어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 발급 가능한 충전식 청소년 전용 '토스 유스카드'를 출시

○ (하나은행) 만 14세 미만의 유소년도 가입 가능한 페어런트 테크(Parent tech) 컨셉의 유스 전용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를 출시(2021)

○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mini에 대응해 본인 명의 계좌 없이도 송금, 입금, ATM 이용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Z세대 전용 플랫폼 '리브넥스트'를 출시(2021)

Ⅳ. 시사점 : 미래 손님인 잘파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잘파세대는 아직 독립적 소비자 지위를 갖지 못하나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한 소비집단이므로 지속적 관계형성을 통한 마인드쉐어 선점 필요**

○ 소비자학에서 소비자는 성인 기준이나 잘파세대는 이미 가정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부모 영향으로 조기에 본인명의 금융상품 보유

○ 아직까지 잘파세대에게 최초 상기도가 높은 금융기관은 전통은행이므로 향후 자산관리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 **잘파세대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되며 특히 현존하는 가장 어린 세대인 α의 밀레니얼 부모에게 어필함으로써 가족금융의 기반을 마련**

○ 잘파세대 내 최대 30년의 연령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도 학령기에 따라 은행의 가치 인식과 상품 및 서비스 니즈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기별 관리 변화가 필요

○ α세대는 금융거래시 부모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자녀의 첫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 공략을 통해 유스 손님 유입을 극대화

□ **잘파세대를 디지털 only 세대로 부르지만 디지털은 이 세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수단일 뿐 이들 또한 인간 본연의 욕구는 동일하게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 잘파세대 역시 시간을 초월해 변치 않는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커뮤니티, 소속감 등을 갈망할 것이며 이러한 욕구가 이들에게도 핵심 동인으로 작용

3. 한국사회와 자살예방정책: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2023. 10.)-

□ 한국: 반복되는 정책과 악화되는 현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자살률”은 “ OECD 최저 출산율”과 함께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다. 낮은 출산율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지표라면 **높은 자살률은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계산하는 자살률이 10명 이하였던 대한민국 자살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8년 22.7명으로 급등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의 특징적 지표인 저출산율 역시 2002년부터 국가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같은 해인 2002년부터 OECD 자살률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자살과 저출산의 심각한 양상이 같은 시기에 심화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방식 역시 유사**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정책 역시 2004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유사한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가지 국가정책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저출산 국가계획이 시작된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에 비해, 최근 통계인 2021년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자살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23.7명에서 2021년 26.0명으로 국가계획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더 높아졌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 31.7명과 비교하면 현재 다소 낮아졌으나 **전세계적인 감소하는 자살률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계속 높은 수준으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국가자살예방정책 : 목표 vs. 실패

○ 정책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자살예방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1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2004-2008)의 목표였던 2010년 인구 10만명당 18.2명은 실제 자살률 31.2명으로, 제2차 기본계획(2009-2013)의 목표였던 2013년 20.0명은 실제 28.5명으로,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의 목표였던 2020년 20.0명은 실제 25.7명으로, 명칭이 변경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2022)의 목표였던 2022년 17.0명은 아직 공식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잠정 추산치 약 24.4명으로 파악되어, 4차에 걸친 국가계획 모두 목표달성에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이 모두 실패했다는 점은, **정책의 실천 혹은 정책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4월에 발표된 제5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인 18.2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목표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물론 국가자살예방정책은 자살률로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살예방 대책의 근간이 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자살예방사업의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5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만들어졌으며, 두 센터가 병합되어 더욱 확대된 조직으로 2020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한편, 2018년에는 '역대 최초'라는 강조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예방이 포함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내에 자살예방정책과가 2018년 신설되었다. 국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2018년 국회자살 예방포럼이 출범했다.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19년 국무총리 직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성과가 있었다.

○ 예산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추산

방식에 따라 규모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2009년 자살예방 사업 관련 직접 예산이 약 5억원 수준이었던데 비해, 2021년도 약 39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즉, **제도와 조직, 예산 증대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국가정책의 수립,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 과학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물론 자살률 하나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개별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살률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국가정책 효과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 한국사회 자살의 쟁점: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 국가적 자살예방정책은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 위기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8년 급증한 이후, 2003년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인구 10만명 당 30명 이상으로 증가해 2011년 국제비교를 위한 인구보정 자살률 33.8명(실제 자살률 31.7명)까지 치솟았다.

○ 이에 2011년 이후 맹독성 농약 등 치명적 자살 수단의 제조 및 판매 금지,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인 자살예방 노력을 통해 비교적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자살률은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태이다.

○ 흔히 IMF 경제위기라 불리는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1990년대 초반에는 자살률 10.0 미만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아진 것인가

□ 현실1: 노인자사률, OEDC 평균의 3배

○ 한국의 자살에서 가장 심각한 특징은 높은 노인 자살률이다. **청장년에 비교해 노년이 될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임과

반대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60대 인구 10만명 당 약 34명, 70대 약 46명, 80세 이상 약 67명으로, OECD 평균 노인자살률에 비해 약 3배 높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양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반대방향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부족**함이다. 공적 복지제도가 부족한 대한민국은 일종의 사적 복지제도에 의해 과거 지탱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가족내 경제 부양의 사이클, 즉 효(孝)라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가정중심적사적(family-centered private) 복지체계가 대한민국의 부족한 공적 복지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선진복지 국가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를 가족 안에서 책임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90년대 말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위태로워지고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사적 복지체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사적 복지체계의 붕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노인세대**였기에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으며 이는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실2: 압도적으로 높은 여성자살

❍ 여성 자살 역시 대한민국 자살률의 특징적인 면이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더 치명적 자살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자살률이 약 2배 더 높다는 이유로 여성자살의 심각성이 간과되곤 하지만,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자살의 심각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자살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로 평균의 약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 여성자살률은 1위(12.8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며, 2위와 3위인 벨기에와 일본보다 약 50% 높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 한국의 여성자살률은 이미 2002년부터 OECD 국가 중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1위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가장 높았던 2009년에는

자살률 22.8명으로 OECD 평균의 약 4배가 되는 높은 수준이었고 2위였던 일본의 2배였다. 한국의 남성자살률이 OECD 신규 가입국 통계까지 포함해 비교했을 때 단 한번도 1위가 아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여성 자살률은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상태가 항상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정신건강의 상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불안정성, 여성 대상 폭력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자살예방 전략: 국제적 퍼스펙티브

○ 자살예방 국가전략이란, 단순히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자살예방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살 예방활동의 근간을 계획하고 다양한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체계를 말한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을 분석하였을 때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유무가 자살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음을 보고하는 연구를 볼 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전략이 국가적인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자살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며,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살문제에 대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중요성**을 WH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를 명확히 인식시킴. **둘째,** 정부가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나타냄. **셋째,** 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킴. **넷째,** 자살예방과 관련된 관계자를 파악하고 각 부분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함. **여섯째,**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며, 관계자의 책임성을 증진시킴. **일곱째,** 자살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한국에 필요한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과 포괄적 접근

❍ 1차 국가정책이 시작되던 2004년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3.7명이었던데 비교해, 최신의 통계인 2021년 자살률이 26.0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을 볼 때, **지난 약 20년간의 자살예방 국가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가장 핵심적인 점은 자살예방 국가전략이 직접적인 자살예방 정책만이 아닌, 근본적인 관련 정책에 스며들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살예방 사업 중심의 구분된 직접 정책에서 확대하여, 빈곤, 보건의료, 노동, 교육 등의 사회정책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자살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다양한 영역을 통합시킨 **범국가적 통합 자살예방 목표같은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살 관련 분야를 연계하여 **전분야에 걸친 지속가능한 국가차원의 국가 자살예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각 영역별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자살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일이다. 그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통합하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역할이 정부에 있으며, 정부가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해야 한다. 자살예방 국가정책은 단시간에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정파와 이념을 넘어 전 국가적 지원과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라북도의 대응과제

-전북연구원(2023.10)-

Ⅰ. 이차전지 산업과 성장 전망

1. 이차전지 개요

○ 이차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이차전지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등에 사용
- 이차전지의 대표적인 리튬이온전지는 친환경 전기차의 주력 전지로 다른 배터리에 비해 무게와 부피를 소형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며,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의 이온을 전달하고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2)

- 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활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
- **충전**은 **양극에서 분리막을 지나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방전**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임

2. 이차전지 산업의 공급망

○ 이차전지 공급망은 크게 원자재(리튬, 코발트 등)-소재·부품(양극, 음극 등)-이차전지 제조로 구성되어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 등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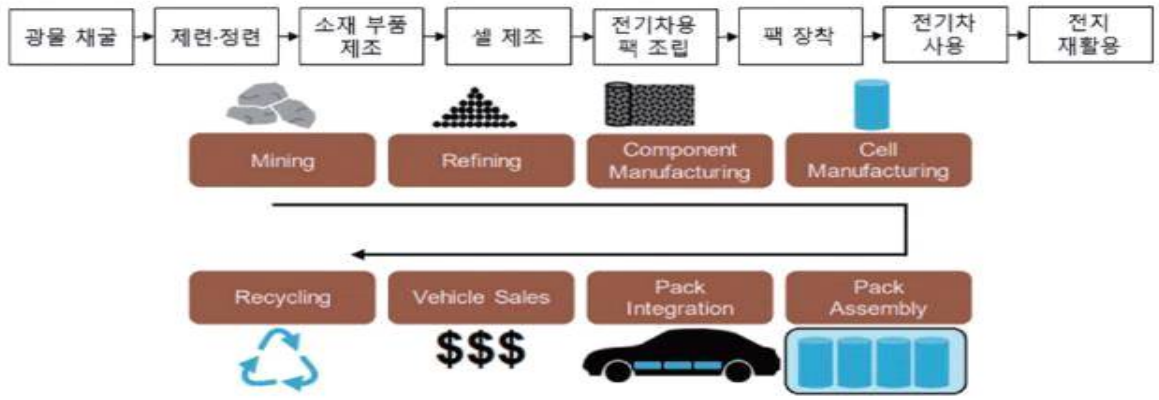
- **원자재**로는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 세계 각국에 매장된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이 1차 가공하여 공급**
- **주요 소재**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으며, 양·음극 활물질과 부품인 집전체(동박, 알루미늄박), 외장재 등이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
-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경우, 일반적인 이차전지의 생산 과정인 원자재의 채굴, 정제, 소재부품 제조, 셀 제조 이후에 전기차용 팩 조립과 장착, 전기차 사용과 전지의 재활용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이차전지 산업에서 소재 및 부품의 재료비 비중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

이고, 이 가운데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의 4대 핵심 소재부품이 전체 원가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산업연구원, 2022)

○ 최근 이차전지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 및 이차전지의 환경적 측면 강화에 따라 폐배터리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산업이 이차전지 산업의 공급망 단계에 포함되고 있음

〈그림-2〉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망 단계 개요



자료: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2020

3. 이차전지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이차전지 시장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으로 이차전지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탄소중립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규제 강화와 소비자·투자자의 선호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전기차의 수요 급증은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수요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음

○ 2019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807억 달러에서 2024년 1,363억 달러로 연평균 1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Tech Navio, 2020)

- **이차전지의 종류별로 성장률**을 살펴보면, **리튬이온전지는 연평균 17%**, 납축전지는 4%, 기타 전지는 연평균 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활용별로는 자동차 배터리 분야는 2019년 265억 달러에서 2025년

689억 달러로 연평균 17%로 급격히 성장하고 산업용 전지는 연평균 12%, 휴대용전지는 연평균 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국내 이차전지 시장의 규모**는 4조 4,590억 원에서 2026년 12조 4,111억 원으로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연평균 1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Markets and Markets, 2022)

Ⅱ.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과 특화단지 현황

1.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 **전라북도의 이차전지 기업**은 **총 39개**로 **동박, 슈퍼커패시터,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는 동박(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리리얼즈), 전해액(천보BLS), 재활용(성일하이텍), 슈퍼커패시터(비나텍)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 전라북도 이차전지 주요 기업은 2019년 총 7개에서 2023년 39개로 약 5.6배가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투자는 2019년 1,370억원에서 2023년 7조원으로 약 52배가 증가하였음

○ 새만금의 **이차전지 기업은 총 63개사의 입주가 예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와 소재중심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화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17개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6.4조원으로 기업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총 63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할 예정임
- 새만금 입주 및 투자 예정 중인 이차전지 기업은 주로 양극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에 해당**하며, 이차전지 소재 분야 선도 기업들이 새만금을 생산 기지로 하여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차전지 선도기업과 입주기업은 자동차 전방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 ESS분야 등으로 이차전지 전후방 사업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

〈그림-6〉 새만금 이차전지 선도기업 현황



자료: 전라북도, 2023

○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와 지원을 위한 공공연구원, 대학 등 5개 기관의 5개 분소가 운영 및 준비 중에 있음

- 전라북도의 주요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단지 내 구축시설을 통한 연계지원이 가능
- **이차전지의 인증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전기안전연구원**이 새만금에 **입주 예정**
-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분야 기술개발, 시험, 생산지원, 인증/평가지원과 함께 네트워크, 인력양성, 창업보육, 자금지원 등을 위한 총 23개 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응용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실현이 가능

2.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
-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

○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정된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지정
-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육성 추진

〈표-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내용

▶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 특화단지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23년에는 1천억원 지원)
▶ 정부 및 공공기관(7.1일 시행)의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해 예타 특례 가능(신속처리 등)
▶ 인허가 타임아웃제(7.1일 시행) → 첨단위의 인·허가 요청 후 60일내 미처리시 처리 간주
▶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예: 일반공업지역 최대 350→490%)

○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全 밸류체인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 광물가공-소재-셀-재활용으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
- 첨단전략기술 보유 선도기업 유무, 선도기업 및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그림-7〉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3

○ 전북 **새만금**은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로 신규 조성할 예정**

- 전구체(전기차 800만대 분량/연) 양산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
-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인·허가 신속처리 ▲ 킬러규제 혁파 ▲ 세제·예산 지원 ▲ 용적률 완화 ▲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 예정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수행주체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 2, 5, 6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 2, 5, 6공구의 총 14.1㎢(신청면적 8.1㎢ + 확장면적 6.0㎢)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주체로 참여
- 3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3개사(LG화학, SK이노베이션, 성일하이텍(주))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Ⅲ.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성과와 파급효과

1.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의 역할 확대
-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기술 및 관련 인력 확보를 통해 첨단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기반 마련
- 이차전지 기업 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적 파급효과 기대

○ **4대 소재와 폐배터리의 순환경제로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혜택 지원으로 이차전지 기업의 집적화,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소재 및 재활용으로 국내외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핵심 분야를 완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연계한 지역의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생태계 확장과 혁신성장 기반 확대
- 이차전지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상용화→산업화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창출

2.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제적 효과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세액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조사 대상 우선 선정, 판로 개척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혜택 지원 예정
-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생태계 확대, CF100·RE100 실현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가속화
- 산·학·연과 연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발생**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과 시설구축 등 대규모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발생
-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생산액 14조 2,120억원과 부가가치 4조 7,182억원이 발생하며, 전북지역에서만 생산액 8조 4,853억원과 부가가치 2조 7,241억원이 발생
- 고용은 전국적으로 56,975명이 증가하며, 전라북도는 31,78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8년까지 이차전지 기업의 예상 누적매출액을 54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액 109조 9,690억원과 부가가치 35조 2,238억원이 발생하며, 전북지역에서만 생산액 65조 2,315억원과 부가가치 19조 7,942억원이 발생

Ⅳ.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대응과제

○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 확대**

-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미래 이차전지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한 R&D 컴플렉스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라북도 핵심 산업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투자요인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지원, 입지 확보, 세금 공제,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확대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평가・인증센터 등 전주기 인프라 통합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

-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 CF100・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연계와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 기반시설 확대**

5. 지역대학 졸업자의 지역 이동 및 취업성과

-한국교육개발원(2023. 9.)-

□ 지역대학 졸업자들은 첫 직장을 어떻게 선택할까?

○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 간 인재 유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대졸자의 졸업 후 지역 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녹아있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 재수·편입, 졸업, 취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연쇄적인 지역 이동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이동이 긍정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은 이제 중앙정부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이 되었다. 최근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변화 역시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을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꾀하려는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에 따른 **취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한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분석

○ 본 분석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 승인 통계(제920024호) 자료로서, 총 7가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졸자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 더불어, 대졸자 중 취업자에 관한 자료는 건강보험 행정 DB와 연계함

으로써, 대졸자의 학사정보와 구체적인 취업 현황을 연계하여 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 대졸자 취업자의 지역 이동 현황



[그림 1] 취업 대졸자의 지역 이동 현황(대학→직장)

○ 일반대학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지역이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대졸자 대부분이 수도권(85.2%)에 위치한 직장에 취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나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대전・세종・충청권(7.1%), 강원권(2.1%)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대전・세종・충청권, 강원권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 소재지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각각 59.4%, 64.4%)이 가장 높고, 동일 권역에 취직한 대졸자가 각각 32.8%, 23.4%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졸자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해당권역에 잔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취업 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는 동일 권역 내의 직장에 취업**하여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대졸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일 권역 내의 직장에 취업한 대졸자 비율은 부산・울산・경남권(58.6%), 제주권(57.9%), 광주・호남권(51.7%), 대구・경북권(43.8%)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권역에 잔류하는 대졸자가 과반수**라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수도권과의 근접성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93.6%)의 경우, 대졸자 대다수가 수도권 내 직장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과 근접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권(71.9%), 제주권(69.0%), 광주・호남권(60.8%), 대구・경북권(58.2%) 순으로 50% 이상의 대졸자가 해당 지역에 잔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졸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권역에 취업하여 잔류하는 대졸자와 수도권으로 취직하여 이동하는 대졸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권의 경우 49.3%의 대졸자가 동일 권역에 잔류하고 44.7%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강원권의 경우 44.6%의 대졸자가 강원권 내 직장에 취업하고 44.4%가 수도권의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대졸자의 취업 이동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일 권역에 정주하는 대졸자의 비율이 높으나,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일반대와 같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취업 시 대졸자의 지역이동**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지역별 일자리 수, 임금 등의 노동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고교-대학-직장 이동 현황

1. 수도권 직장으로 이동

○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갖는 대졸자의 고교 및 대학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전문대학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교, 대학 모두 수도권 출신인 대졸자(일반대: 43.9%, 전문대: 49.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수도권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각각 19.9%, 16.6%)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도권 취업자 중 60% 이상이 대학 입학 전까지 수도권에 정주하고 있었으며, 직장 또한 수도권 내에서 취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일반·전문대학 모두, 수도권 취업 대졸자의 약 20%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동일 권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 첫 직장에 취업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취업한 대졸자 중 약 10%의 경우,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하고 수도권 내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 정도의 대졸자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타 권역의 대학교에 진학한 후 취업 시기에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점 및 경로의 차이를 지니긴 하지만, **수도권에 취업한 대졸자 중 약 35%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이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수도권 직장으로 이동

○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갖는 대졸자의 고교 및 대학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전문대학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과반수의 대졸자는 고교,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권역에 정주하는 비율은 일반대학 보다 전문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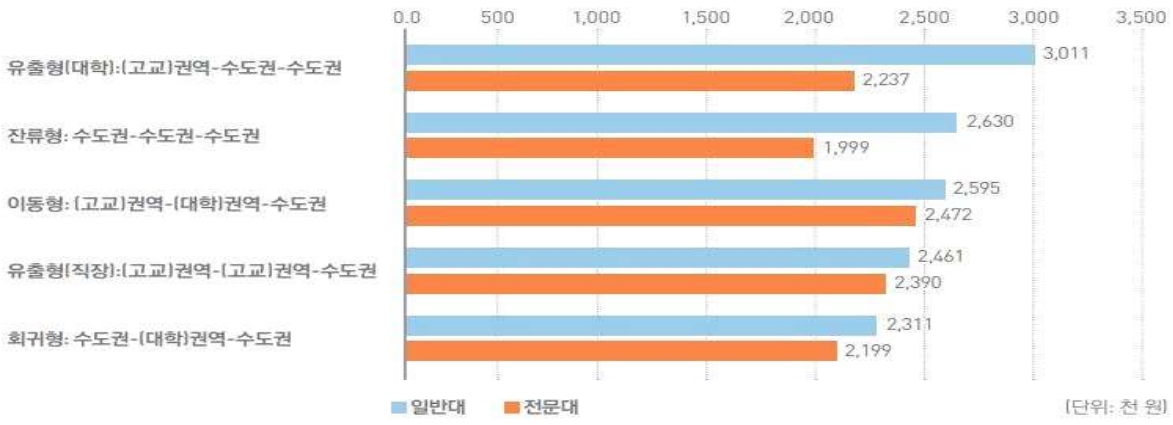
○ 다음으로 취업 또는 대학 진학 시기에 직장이 위치한 권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타 권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18%,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한 후 비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가 9%,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권역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와 동일한 권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 한편, 대학 진학 시 수도권 또는 타 권역으로 이동하였으나 고등학교와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직장에 취업한 회귀형의 비율은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귀형 내에서도 비율을 비교하면, 대학 진학 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보다 타 권역으로 이동한 경우에 회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출신의 60~70%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역 이동의 모습을 보였으나, 고등학교와 동일한 권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 가장 많은 학생은 고교, 대학, 취업까지 모두 동일 권역에서 잔류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 외에도 타 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을 한 후 동일 권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 권역별 고교-대학-직장 이동 현황에 따른 취업 성과

1. 수도권 취업 대졸자의 초임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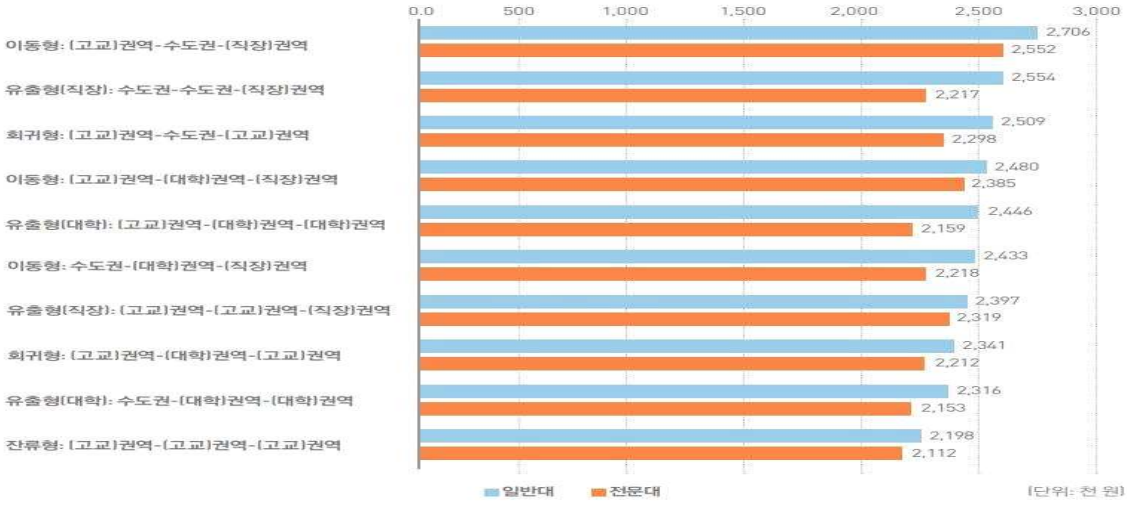
[그림 4] 수도권 취업 대졸자의 초임 급여

○ **일반대학의 초임 급여**를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월 301만 원)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대학, 직장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는 잔류형(월 263만원)이 두 번째로 높은 임금을 보여,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 **전문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직장에 취업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타 권역으로 이동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월 247만 원)이거나 고교, 대학 모두 동일한 비수도권 지역에 머무른 후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월 239만 원)에 다른 경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교, 대학, 직장이 모두 수도권인 잔류형의 경우(월 199만 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특징을 보였다.

□ 비수도권 취업 대졸자의 초임 급여



[그림 5] 비수도권 취업 대졸자의 초임 급여

출처: 백승주 외(2022, p.130)의 결과를 재구성함.

○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한 후 비수도권 지역의 직장에 취업했을 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월 270만 원)에 가장 높은 임금을 보였고, 차례대로 고교, 대학을 수도권에서 머무른 후 지역으로 취업한 경우(월 255만 원), 수도권 대학 진학 후 고등학교와 동일한 권역으로 회귀한 경우(월 250만 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였다. 한편, 고교, 대학, 취업 단계에서 모두 동일 권역에 잔류하는 경우(월 219만 원)에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의 경우, 고교, 대학,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이동을 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또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경우(약 255만 원)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또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대학 생활을 한 후,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직장에 취업한 경우(약 238만 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한편, 고교, 대학, 취업 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권역에 잔류하는 경우(월 211만 원),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무리하며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지역 이동과 취업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전문대학 대졸자 모두 첫 직장에 취업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대전, 세종, 충청권, 강원권)에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대학과 비교했을 때 **전문대학 대졸자들은 졸업한 대학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였다

○ 위와 같은 지역 이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의 고교, 대학, 직장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 첫 직장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졸자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수도권에서 다녔거나, 수도권 고등학교에 다녔으나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 후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취업으로 비수도권 직장에 입사한 대졸자의 경우 과반수가 고등학교, 대학교의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역 이동 유형에 따라 일반·전문대학 취업자의 초임 급여를 비교한 결과, 학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대학 졸업자는 직장의 지역과 관련 없이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의 초임 급여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고교, 대학, 직장 단계에서 지역 이동을 한 유형이 고교, 대학, 직장의 위치가 모두 동일한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대졸자의 지역 이동과 취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전문대학 모두 과반수의 대졸자가 동일 권역에 잔류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동일 권역에 잔류할 때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으나 이동에 따라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졸자의 지역 이동 관점에서 학생들 스스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본 분석에서도 지역 이동 측면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인되며 취업 성과 부분에서도 일부 수도권이 유리한 측면이 관측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수도권이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들에게 취업하기에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취업 성과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이동 유형 중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경우에서도 취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졸자는 자신의 스펙뿐만 아니라 직장의 임금 등과 같은 조건 및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결정을 내리므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취업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경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응… 이용자 98% 만족

-경상남도(2023. 10. 5.)-

-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8%가 만족…'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 가임·비가임 여성 건강관리로 의료공백 해소

○ 경남도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8%의 도민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지난달 11일 공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8%가 '검진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주변 주민에게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소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도민도 81%에 달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과 문자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 검사 대상은 종목별로 '가임 여성 검진'이 38%로 가장 많았고, '비가임 여성 검진' 28%, '임신부 진료·검진' 21%, '배우자 검진' 13%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가 28%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 이유로는 '정기적인 순회 진료로 편리해서'가 33%, '진료 및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가 21%로 나타났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동 검진반이 의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 사각 지역 임신부, 가임 여성의 산전 관리와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으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3개 지역에 매월 각 3~5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를 통해 분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임신부를 위한 초음파 태아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막달검사와 가임·비가임 여성 및 배우자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 올해는 신규 검진 항목으로 결혼과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태아 기형아 정밀검사인 니프티(NIPT) 검사 항목도 추가했다.

○ 얼마전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한 이모(64세, 여, 의령군) 씨는 “부인과 검사가 항상 꺼려져서 회피했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며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임산부 및 가임·비가임 여성이 농촌지역에 살아도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이동 진료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여성의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부산시, 어린이 버스(시내,마을)·도시철도 요금 무료화 시행

-부산광역시(2023. 10. 5.)-

-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
  6~12세 어린이 18만 4천여 명 수혜
- 교통카드 구입 및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현금 이용 시 종전대로 요금 부담해야
- 부산시 교통복지의 첫걸음 평가, 가족 단위 이용객 증가 등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 부산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내일(6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버스(시내, 마을)·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내일(6일)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시 노력의 일환이다.

○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란 종전 0~5세 영유아에 한정해 무료 적용하던 대중교통 요금을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 교통수단은 부산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부산도시철도다.

- 현행 어린이 요금은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350원(현금 400원), 도시철도는 1구간 650원(현금 700원), 2구간 750원(현금 800원)이다.

○ 시는 이번 어린이 요금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 1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 어린이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량은 2022년 기준 연간 7백8만 통행, 일평균 1만9천4백 통행이다. 하루 2회 이용을 가정하면 일평균 9천7백여 명의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 요금 무료화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종전대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기존 어린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기존 카드가 없으면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카드를 구입, 어린이 생년월일을 등록한 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앱(로카M충전소)에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 교통카드 등록 방법 >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교통카드를 구입 후 어린이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즉시 사용 가능
- 로카M충전소 앱 다운로드/어린이의 생년월일 입력 후 카드등록

○ 이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은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산시의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 어린이가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지만, 어린이의 경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 등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시장은 "이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시행을 통해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자라나는 세대가 더욱 친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교육에 힘써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편, 내일(6일) 새벽 4시부터 시내버스(일반, 좌석)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 적용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350원 인상된 1,550원, 좌석버스는 400원 인상된 2,1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이다.

3.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맞춤형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개발

-서울특별시(2023. 10. 11.)-

- 서울시 어린이집 공기질 부적합 시설 중 85.7%가 총부유세균 초과 시설
- 실시간 측정이 어려운 총부유세균의 측정기술 한계를 해결한 예측 모델 개발
- 통합환기지수 활용 다양한 공기오염원 관리 가능…'고농도' 알림으로 즉시 환기 유도
- 맞춤형 환기로 계절마다 유행하는 병원성 세균 감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환경 요인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맞춤형 실내공기질 환기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하지만,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식사나 청소 후 환기하도록 권장해왔다.
- '환기지수'는 측정항목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실내공기 오염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을 예측하여 환기 시점을 알려주는 지표다.

❍ 서울시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19년~'21년) 부적합 시설의 85.7%가 총부유세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총부유세균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을 의미하며, 농도가 높은 경우 건강상 위해가 우려돼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고농도로 증식하는 특성이 있지만, 간이측정기로는 총부유세균에 대한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해 어린이집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총부유세균 농도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 자동측정기에서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온·습도 등의 값으로 실시간 총부유세균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환기지수’로 총부유세균 농도를 알려주고 고농도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총부유세균 농도 예측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PM 2.5), 이산화탄소(CO_2)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환기하도록 알려주는 ‘통합환기지수’까지 개발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연면적 430m^2 이상인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관련 업체와 협업해 실내공기 자동측정기기에 ‘통합환기지수’ 모델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는 실시간으로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환기지수’가 적용되면 알람이 울렸을 때 환기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측정기기 적용 예시 〉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모습과는 다를 수 있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서울시가

개발한 ‘실내공기질 통합환기지수’가 계절마다 유행하는 병원성 세균 등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상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어린이집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4. 충북도, 지자체 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 관계기관 협업으로 70여년만에 무연고 전몰군인 영예 선양

-충청북도(2023. 10. 10.)-

○ 충청북도는 10일 가족과 연락이 끊겨 70여년간 방치되어 사실상 무연고 전사자 묘소를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했다.

○ 고(故) 최영운 상병(舊 하사)은 6.25 전쟁 직전 육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으로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에 투입돼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고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무연고 묘소에 홀로 남아 있었다.

○ 평소 지역 사회발전에 앞장서고 보훈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도의원(정책복지위원회, 음성1선거구)은 묘비명에 적힌 ‘고 육군 하사 최영운지 묘’와 ‘단기 4283년 5월 5일’ 글귀를 눈여겨 보고 무연고 묘 관련 사항을 도 보훈담당 부서에 사실을 알렸다.

○ 이 내용을 전달받은 도 복지정책과는 무연고 전사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먼저, 음성군을 통해 고인의 제적등본을 확보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육군본부, 병무청 등과 직접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정확한 군번, 입대·전사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이후 충북북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족과 연락이 닿아 70여년 동안 돌봐주는 이 없이 방치됐던 고인의 유해를 유족의 뜻대로 11일 서울 현충원 합동 봉한식 후 충혼당에 모시게 되었다.

○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님과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증진하기 위해 충북도의 보훈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5. 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행정지원청’ 설립 추진
- 업무경감 체감도 높이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전폭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10. 19.)-

○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현장 밀착형 ‘학교행정지원청’을 설치해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지원청’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 교사들의 부담이 큰 학교 행정업무 등을 이관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 ‘학교행정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총 42명)을 꾸려 학교 행정업무를 중점 지원한다.

○ 2024년 휴교 예정인 신연초에 임시로 문을 연 뒤, 하윤수 교육감의 서부산 살리기 정책에 따라 영도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 ‘방과후학교지원팀’은 초등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심사, 자유수강권 대상자 관리, 회계 및 통계 업무를, ‘학교채용지원팀’은 교육활동 보조인력 지원, 자원봉사자 인력풀 관리,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를, ‘학교행정지원팀’은 그동안 학교 내 업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행정업무를 각각 이관받을 예정이다.

‘학교행정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수업 및 생활교육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 행정업무 ▲학교가 최종 권한을 가지며 대리 수행이 가능한 업무 ▲이관 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부산교육청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전담기구 명칭, 조직·운영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 ‘학교행정지원청’은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인력과 행·재정 조직 체계를 통합하여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행정업무의 지원 내용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학교공통 행정업무 상시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이관 업무를 발굴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통해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행정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가. 오염수 방류 진행경과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일부가 폭발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3·4호기 원자로에는 폭발로 녹은 후 굳은 연료가 남아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로 건물**에는 인위적으로 연료에 접촉한 냉각수와 자연적으로 유입된 빗물 및 지하수 등이 섞이면서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트리튬 등 주요 핵종을 포함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

○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이러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원전 오염수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120톤이 발생하였는데, 도쿄전력은 2013년부터 다핵종 제거시설(ALPS :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을 설치하여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현장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133만톤**으로 **전체 탱크 1,068개의 총저장용량 137만톤에 육박하여 곧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현황]

○ 저장량 : 약 133만톤(저장가능용량 137만톤, 탱크 1,068개) ○ 발생량 : 약 90톤/일 (최근 3년간 평균 약 120톤/일) ○ 방사능 : 저장량의 약 70%가 방출기준 초과 ○ 주요 진행경과 - 2021. 4. : 일본정부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 - 2021. 8. : 도쿄전력,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 발표 - 2022. 7. : 실시계획 日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인가 - 2023. 2. : 도쿄전력, 실시계획 수정안 제출 - 2023. 5. : 실시계획 NRA 최종인가 - 2023. 7. : IAEA 종합보고서 발표

○ 최근 진행경과를 살펴 보면, 올해 2월에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5월에 NRA가 이를 인가하였다.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도쿄전력은 올해 여름경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 규제기준에 따라 사고원전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3}H)는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에 방류**하며, **향후 30~4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변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와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 **일본 동쪽 해역 → 미국 알래스카·캘리포니아·하와이 → 북적도 → 필리핀 → 일본 주변 해역으로 순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137}Cs, 세슘137)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북서태평양해역에서 쿠로시오 및 오야시오 해류 모식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2023. 4., p.2에서 재인용

나. 해양수산부 오염수 방류 대책 사업 현황

○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공고화'를 투자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안심소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수산물 수급안정 등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2022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대책 사업**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위생관리' 및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축사업'과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성 감시**를 위한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사업 등이 있다. 6개 세부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2,710억 5,900만원이고 이 중 2,697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2년도 해양수산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2022년	
			예산현액	집행액
수산물 안전	수산물 위생관리	• 방사능장비확충 사업: 정부 방사능 검사능력 확충 등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구매	1,585	1,571
		• 위공판장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지원 사업: 수협 소속 전국 위·공판장 및 지자체 방사능 분석장비 지원	2,100	1,509
		• 국민청원 유해물질 분석지원 사업: 국민 참여형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민 신뢰도 제고	220	166
	수산물 품질관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수산물 인증제 등 운영	8,834	8,377
수산물 가격안정	비축사업	•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수매 및 방출	108,070	108,070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주 생산시기에 수매자금 지원	85,370	85,225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 수산물 소비감소에 대응 할인행사 추진	61,000	61,000
해양방사성 감시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 해양방사성물질의 국내해역 유입 검사	3,880	3,857
합 계			271,059	269,775

자료: 해양수산부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 현황

○ 교통안전활동 사업은 교통경찰의 인건비성 경비, 범칙금 통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교통경찰 장비 구매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은 교통안전활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55억 300만원 중 440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을 이월, 13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1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통안전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통안전활동	45,494	45,373	129	-	45,503	44,055	149	1,364	42,042
기타교통경찰활동 지원	4,053	3,992	-	34	4,026	3,983	-	43	4,46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800	1,800	-	-	1,800	1,800	-	-	1,8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 분석의견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비율이 낮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다수가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임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020~2022년 지역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건수	국비	지방비	건수	국비	지방비	건수	국비	지방비
서울	14,296	526,920	1,050,840	15,391	321,000	884,520	23,066	464,100	817,800
부산	6,822	-	900,053	7,147	-	667,315	10,585	333,000	1,132,781
대구	5,064	108,780	28,000	5,749	187,500	400,000	7,145	180,000	470,000
인천	1,785	-	300,000	4,847	80,370	300,000	6,154	158,250	369,250
광주	2,337	58,650	271,350	2,325	56,100	143,900	2,983	90,000	210,000
대전	2,443	65,250	158,775	2,514	104,700	244,300	3,495	135,000	315,000
울산	1,636	45,750	110,000	1,443	41,330	100,000	1,488	54,000	100,000
세종	63	-	-	121	-	10,000	111	-	-
경기	18,925	109,350	3,095,150	21,099	280,800	2,438,400	27,238	3,000	2,307,000
강원	3,428	11,790	435,097	3,210	40,800	357,970	4,019	24,000	101,618
충북	1,707	29,220	100,100	2,168	42,900	226,420	2,851	43,500	489,577
충남	2,423	41,730	227,250	2,885	50,700	276,705	3,887	80,760	357,280
전북	3,405	66,600	308,708	3,363	48,000	619,880	4,299	39,300	579,600
전남	2,122	72,000	147,013	2,299	24,600	188,500	3,630	60,000	709,807
경북	4,133	77,430	513,980	4,145	19,200	344,800	4,948	28,830	450,270
경남	4,341	122,370	555,000	4,287	77,800	402,000	5,713	76,260	412,640
제주	1,072	56,160	91,490	1,004	16,200	74,900	1,330	30,000	70,000
계	76,002	1,392,000	8,292,806	83,997	1,392,000	7,679,610	112,942	1,800,000	8,892,623

자료: 경찰청

-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및 확인 절차를 걸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금전적 혜택으로 선불교통카드 등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동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진반납 신청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은 10만원 수준으로 낮아, 실제 차량을 전혀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만 자진반납의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운전자**들은 1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운영 및 이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경찰청은 동 제도에 대한 별도의 효과성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동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운전시간 및 자진반납 비율,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반납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운전 여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금전적 혜택 제공 시 운전면허 반납 의사 조사 등 효과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동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기초자료의 확보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 참고로, 통계청의 통계청논문공모전에서 시상한 민간연구자의 연구는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65세~74세 고령운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에 비하여 **운전면허 반납은 7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진반납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 따라서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차량운행시간 및 자진반납비율 등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 및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운영 여부 및 **지속 운영 시 연령대별 지원액의 차등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연령 상향 등 모바일 발송 확대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2023년 결산 분석/2023. 7.)-

□ 현 황

○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등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세무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617억 3,200만원 중 615억8,500만원(99.8%)을 집행하였고 1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고지서 등 발송	55,959	55,959	-	5,773	61,732	61,585	-	147	47,704

○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등기우편·일반우편·모바일 발송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등 세법에서 서류의 송달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송달의 효력이 없는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 등은 일반우편과 모바일 발송을 하고 있다.

[고지내용별 발송 방식]

고지내용별	발송 방식	비고
고지·독촉·강제징수 등	등기우편	서류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발생이 요구되는 경우
각종 신고 안내문 등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서류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이 불필요한 경우

자료: 국세청

○ 이 중 모바일 안내문 발송은 2019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전자고지」시범사업에 국세청이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1차 발송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발송은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를 대상으로 각각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페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는 KT 컨소시엄과 수의계약하였다.

□ 분석의견

○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 대상이 되는 각종 신고 안내문을 1차로는 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를 통해 발송하고, 1차 발송이 실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컨소시엄)을 통해 2차로 발송하며, 2차 발송도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 최근 5년간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모바일 발송이 시작됨에 따라 일반우편의 발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우편물 발송건수 및 요금 지급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우편물센터		지방청 · 세무서		우편물센터		지방청 · 세무서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8	15,651	30,939	2,246	4,531	38,385	11,654	1,099	363	-	-
2019	16,462	34,331	2,221	4,800	29,170	9,366	914	321	5,083	593
2020	13,528	30,526	2,431	5,626	22,257	7,781	782	297	17,223	1,927
2021	13,376	32,287	2,485	6,191	16,341	6,081	858	333	24,273	1,829
2022	18,593	45,416	2,049	5,407	16,737	6,822	521	252	30,247	2,327

자료: 국세청

-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우편 단가와 모바일 발송 단가를 비교해보면 송달의 효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우편(규격 내) 발송단가는 건당 430원이고, 모바일 발송의 경우 카카오페이(발송+열람) 99원, KT 165원으로, 1·2차 모바일 발송 단가를 합쳐도 일반우편 단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모바일 발송을 시작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2022년의 경우에는 약 3,000만건의 모바일 발송을 통해 10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우편 단가와 모바일 발송 단가]

(단위: 원)

연 도	등기우편	일반우편 (규격 내)	일반우편 (규격 외)	카카오페이			KT
				전자문서		알림톡 (문자)	전자문서(MMS)
				발송	열람		발송
2018	2,130	330	540	-	-	-	-
2019	2,180	380	590	-	110	-	143
2020	2,480	380	590	-	110	-	165
2021	2,530	430	640	22	88	11	165
2022	2,530	430	640	16.5	82.5	11	165

자료: 국세청

- 그런데 2022년도에 국세청 모바일 발송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으로 편성된 5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3억 4,700만원이었고, 일반우편의 경우 2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68억 5,200만원으로 초과집행되었다.

[우편요금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세사업명	편성내역	집행내역
우편요금	◦ 55,405백만원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우편물센터): 41,390백만원(17,295천건×2,480원×96.5%)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6,245백만원(2,518천건×2,480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우편물센터): 7,566백만원** **· 우편발송 2,566백만원 (7,341천건×380원×92%)** **· 모바일발송 5,000백만원 (34,484천건×145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204백만원(536천건×380원)	◦ 61,178백만원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우편물센터): 45,415백만원(18,593천건×2,530원×96.5%)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6,312백만원(2,049천건×3,080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우편물센터): 9,199백만원** **· 우편발송: 6,852백만원 (16,737천건x430원x95.2%)** **· 모바일발송: 2,347백만원 (30,247천건x77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252백만원(521천건x485원)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우편발송 예산 절감을 위하여 모바일 발송 대상을 비중을 확대(82.4%)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집행 결과 모바일 발송은 전체 건수 대비 6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법인,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발송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모바일 발송실패 사례도 많아 실제 발송 건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2023년 일반우편 및 모바일 발송건수 예·결산 현황]

(단위: 천건, %)

구분		일반우편 발송 (우편물센터)		모바일 발송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예산	7,681	20	30,772	80	38,403
	결산	16,342	40.2	24,273	59.8	40,615
2022년	예산	7,341	17.6	34,484	82.4	41,825
	결산	16,737	35.6	30,247	64.4	46,984
2023년	예산	16,341	34.1	31,601	65.9	47,942

자료: 국세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발송의 단가가 우편 발송에 비해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서 모바일 발송 건수는 당초 목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우편발송의 경우 물량 증가로 인해 연례적인 이용 증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의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지내용별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기준]

(단위: 건)

고지내용	모바일 발송대상 연령기준	우편 발송 건수	모바일 발송 건수
(등록임대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55세 미만	73,141	123,409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안내문	55세 미만	275,065	46,057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55세 미만	-	45,127
명의도용방지 안내문	60세 미만	-	36,640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60세 미만	5,691,933	5,678,738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60세 미만	1,099,486	388,30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60세 미만	4,865	9,135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안내	65세	30,235	25,22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	65세	355,112	1,480,478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신고 등 안내문	70세 미만	137,932	451,995

주: 연령 기준은 만 나이 기준
자료: 국세청

- 다만, 국세청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법인, 수신 거부자 제외) 발송하면서도 **일부 안내문의 경우 특정 연령대(55세~70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상인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그러나 **고지내용별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지침은 없으며**, 관련 소관 국·실에서 안내문 내용, 안내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만 55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4.2%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피쳐폰도 고령층의 14.2%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층 중에서도 모바일 형식으로 안내문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발송에 실패하더라도 우편을 통한

고지가 가능하므로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을 높여 모바일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 한해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 나아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특정 플랫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공· 민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의 효과성 및 국민 편의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세청은 현행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9.)–

□ 감사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성과감사를 하였으나, 2019년 10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감사순기에 따른 기관정기감사를 실시

○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주요 제도·사업·정책을 비롯한 행정규제, 조직 운영 및 계약관리 사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감사 기간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사업이나 내·외부 통제가 미흡하여 관리에 사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사

○ 특히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감사를 실시

□ 감사실시 과정

○ 감사는 2023. 3. 29.부터 같은 해 5. 17.까지 35일간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처리

○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9. 1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구분	합계	징계	주의	통보	통보(시정완료)
건수	1	·	·	·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분야**

▪ 출생 후 출생신고(주민등록 등)가 되지 않은 아동은 방임·유기와 같은 아동학대에 노출되거나, 복지급여와 의무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복지제도의 영역 밖에서 소외·방치될 우려가 큰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같은 위기 아동 발굴사업의 조사대상에,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출생직후 부여되는 예방접종 관리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내국인을 기준으로 2015~2022년 2,154명 발생)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해당 아동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의 아동이 이미 사망했거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관련 정책·사업·제도 등에서 위기 아동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의 안위와 양육상태 등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수 조사하며, 조사결과 아동학대 등이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해당 아동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조치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